

실용뉴스

악취규제 강화된다.

모든 사업장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환경부는, 지난 12월 30일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기오염물질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오던 악취가 대기오염물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시설위주의 관리체계로는 악취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악취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그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시·도지사

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하고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악취검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 악취에 관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악취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악취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기간 안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게 된다.

환경관리인에서 환경기술인으로 법률용어 국회통과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회장 이상호)는 최근 '환경관리인'의 법률용어가 '환경기술인'으로 지난 12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 수 고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령(환

경부령 제148호, 2003.12.10)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의 종규모산정방법이 당초 고체환산연료사용량 기준에서 오염물질 발생량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의 제1호 나목에 명시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계수는 연합회 홈페이지 환경법규란 첨부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www.k-eef.or.kr)

대EU 수출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비상

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규정안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대EU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 5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EU가 올해안에 '안전성 없는 화학물질은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고 규정한 'REACH 규정안'을 시행할 경우에 당장 제품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자, 전기,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기간 산업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REACH는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유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

실용뉴스

관리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REACH가 규정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화학산업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자, 전기, 자동차 등 모든 산업에 해당돼 이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에 커다란 영향이 예상된다.

산자부 김철호 서기관은 "REACH 시스템이 시행되면 업계가 물질의 안전성까지 증명해야 하며 EU연내 제조 및 수입업체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한다"며 "이는 EU 국가에 안전성을 이유로 외국 물질의 수입금지 명분을 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 이달부터 하수도로 징수

해남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공 하수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달부터 해남읍 처리구역내 각 세대에 배출되는 하수량을 업종별로 구분, 상수도 사용요금의 25% 정도를 상수도 사용고지서에 포함해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읍 인구는 지난해 10월말 현재 9천222가구 2만6천800명으로 이 가운데 하수도 요금 부과지역은 읍내리 등 9개 마을 3천300가구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1천300가

구를 포함해 모두 4천6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상수도 요금으로 1당 216원씩 19억여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25% 수준을 하수도 요금으로 징수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지하수관에 사용메타기를 설치해 사용량을 검침 부과하게 된다.

군은 해남읍 시가지를 오는 2006년 까지 171억5천300만원을 투입, 하수관로 86.5km를 분류식 하수관거를 신설하기 위해 지난해 구교지구 1차 하수관거 신설공사를 시작으로 14억5천만원을 들여 14.9km 구간을 4월 완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

전주, 우수 오수분리 하수관거 대 대적 정비

전주시가 수질오염의 사전 방지 및 선진 하수관거 체계유지를 위해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우수와 오수의 미분리로 인해 도시팽창과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량이 급증, 하수처리비용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올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4천5백 87억원을 들여 5백97km에 달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이에 시 전체 배수처리구역을

중앙·효자·이중·화산·팔복·덕진·상관처리구 등 7개권역, 37개분구로 나눠 4단계에 걸쳐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밀렵도구 수거자 보상금 지급

야생동물 불법 밀렵도구를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밀렵도구를 수거한 사람에게 개당 최고 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밀렵과 밀거래 신고자에 대해서만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왔다.

경기도, 환경오염방지시설 50억

융자

경기도는 최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5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수질·소음·진동 오염방지시설과 공동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수질오염자동측정시설, 오수·축산폐수 처리시설 및 오폐수병합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국비 또는 지방비를 보조받기로 확정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기업이다.

실용뉴스

용자를 원할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031)249-4221

낙동강수계 수질관리 전문위원 투입
낙동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 등 각종 수질관리에 전문위원이 투입돼 수질과 관련한 조사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1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낙동강을 비롯 금강과 영산·섬진강의 수계 물관리를 위해 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를 담당할 상근 전문위원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한 상근 전문위원은 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에 대한 연구검토,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 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연구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폐기물 반입시간 조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박대문)는 1월 5일부터 3월말까지 폐기물 반입시간을 아침 출근시간대 쓰레기 수송도로상의 교통혼잡 및 폐기물 반입상황 등을 고려, 조정·시행한다고 지난 1월 4일 밝혔다.

조정되는 반입시간은 건설폐기물, 사업장생활계 및 정수오너의 경우 현행 오전 8시(개시) ~ 오후 5시(종료)

에서 각각 30분 앞당겨 오전 7시30분(개시) ~ 오후 4시30분(종료)으로 조정된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 등 기타 폐기물의 경우에는 반입종료 시간만 오후 5시에서 오후 4시30분으로 단축한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확대

올해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 상수원 일부지역에도 사람의 건강,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주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팔당호, 대청호, 낙동강 물금·매리지역 일부에 대해서만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돼 왔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29일 유해물질에 의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 주요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 등 상류 일부 집수구역에 대해 인체·생태계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신규 입지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지역은 낙동강 수계는 기존 10개 읍·면 570㎢에서 103개 읍·면 3천386㎢로 약 6배 증가하고 금강 수계는 27개 읍·면 722㎢에서 100개 읍·면(4천576㎢)으로 늘어나며 영

산강·섬진강 수계는 당초 지정된 지역이 없었으나 신규로 19개 읍·면 918㎢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또 폐놀, 수은, 구리, 납 등 17개 물질로 지정돼 있는 현행 특정 수질유해물질 종류에 올 상반기중 미국 환경청(EPA) 발암구분 B등급인 클로로포름과 1, 2-디클로로에탄 등 2종을 추가키로 했다.

환경저해사범 65명 적발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양병종)는 최근 "지난 10월22~12월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수질 오염 및 폐기물 불법 처리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42건에 65명을 적발해 이중 4명을 구속하고 6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 18건에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불법 매립이 10건에 20명, 공장폐수 무단방류가 7건에 10명, 축산폐수 무단방류 5건에 5명,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 사범 2건에 3명 등이었다.

특히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약 1만3천여t의 무기성오니(汚泥)를 농지조성공사 현장과 골재채취 현장에 불법 매립한 레미콘 제조업체대표 김모(68)씨를 구속했다.

실용뉴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주암호 상류에 은행(銀杏) 가공세척시설을 설치해 놓고 다량의 유기물이 함유된 폐수를 주암호 상수원에 배출해 온 건강식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52)가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제난을 이유로 기업주의 환경 보호의식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상습적 환경오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 및 리스트를 작성,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폐물 처리업 산업단지 입주 제한 첨단업종… 수도권 공장 증설투자 규제 완화

지방이전이 곤란한 핵심첨단업종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투자를 허용,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성장관리지역내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공장증설가능면적을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지난 12월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산업단지내 입주할 수 있는 업종 가운데 입주기업의 산업활동지원과 무관한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업은 근로환경 등을 고려해 입주를 제한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투자애로 해소와 함께 투자유치가 확정단계인 첨단 외국 인투자기업(외투비율 50% 이상) 유치를 돋고 외투기업 유치제도의 공백을 막기 위해 첨단 외국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1년 연장(03년말~04년말)하기로 했다.

또, 현행 시행령은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만을 도시형공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첨단업종도 입지의 특수성, 도시의 자족성 확보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확대했다.

제2종 도시형공장의 경우, 환경적 유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또는 절차를 향후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산자부와 환경부가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와 관련, 그동안 규제개선과 제로 지적됐던 산업단지 지정권자(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건교부장관)와의 협의대상을 대폭 축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삼성전자(05~'10년간 약 50조원), 쌍용자동차(04~'07년간 약 1.8조원)의 증설투자와, LG필립 LCD의 부품단지내 해외

투자기업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고흥군 오는 4월까지, 오폐수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고흥군은 겨울철 갈수기에 발생하고 있는 수질 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각종 오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 단속을 오는 4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오·폐수 788개소 등 1천44개소의 오·폐수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동절기 및 봄철은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돼도 급수가 중단되는 등 대형 수질 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사업장 오염도 검사, 기타 환경 관계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 지도 단속 할 계획이다.

한편 상습 및 고의적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명단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